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 과 보 고 서**

2016. 10. 19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 과 요 약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 인허가 과정 및 학교부지 임대차 계약상 대부료율 적용의 적절성과 서울시의 장학금 과다지급 및 학생 모집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하나고 특위가 구성되어 2016년 10월 22일 까지 일련의 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음.

그동안 하나고 특위는 10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조사 등을 통한 문서검증,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조사 과정에서 ① 설립 인·허가 관련 특혜의혹 문제, ②부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특혜의혹 문제, ③ 이사회와 관련한 회의록의 위법성 의혹, ④ 학교 인·허가 과정상의 특혜의혹, ⑤ 법인전입금 중단 및 학교 운영의 부실 문제, ⑥ 학생모집과 관련한 부정선발 의혹, ⑦ 장학금 관련 특혜 의혹, ⑧ 교사 임용 관련 위반 문제, ⑨ 학교폭력 관련 은폐 의혹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함.

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과 관련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함. 이에 따라 전임 교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하여 파면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총 155,317,112원에 대하여 회수 및 반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성적 조작

의혹 등 7건(9명)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하여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심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장학금 512백만원 보다 212백만원 감액된 300백만원 만을 지급하게 됨. 그리고 2017년부터 하나학원에 지급해야 할 서울시의 장학금 부담액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금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최소 162백만원에서 최대 422백만원이 감액될 것임.

또한 하나고의 법인전입금 출연의 중단 원인이 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해서는 매년 점차적으로 선발 비율을 줄여나가 2019학년도에 최종 폐지(2017학년도 13%, 2018학년도 6%)하는 것으로 결정됨.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 과 보 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I.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경위

- 2015. 4. 7.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결(의안번호 제357호)
- 2015. 4. 14.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안번호 제470호)
- 2015. 4. 23.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의안번호 제485호)
- 2015. 6. 22.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의결(의안번호 제492호)
- 2015. 8. 4.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의안번호 제637호)

- 2015. 9. 18.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의안번호 제 753호)
- 2016. 4. 19.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의안번호 제 1130호)

2. 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이 정 훈	○ 수석전문위원 김 창 범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 경 자	○ 사무요원(17명)
부위원장	국민의당	김 용 석	의사지원팀장 임 학 본
위 원	더불어민주당	강 성 언	의안심사지원팀장 이 준 석
"	"	김 용 석	교육지원팀장 임 학 식
"	"	김 인 제	행정주무관 조 원 상
"	"	김 종 욱	입법조사관 이 원 상
"	"	김 창 원	입법조사관 정 진 국
"	"	맹 진 영	입법조사관 최 원 종
"	"	박 양 숙	행정주무관 김 선 철
"	"	박 호 근	행정주무관 신 경 미
"	"	서 영 진	행정주무관 이 재 석
"	"	서 윤 기	시간제 임기제 문 은 영
"	"	우 창 윤	시간제 임기제 조 규 하
"	"	유 용	시간제 임기제 김 고 은
"	"	이 윤 희	시간제 임기제 김 영 대
"	"	장 인 흥	시간제 임기제 배 재 현
"	"	조 상 호	시간제 임기제 안 진 주

"	새누리당	이 명 희	행정주무관 김 은 선 ○ 워드요원(1명) 백 경 하 ○ 속기 및 녹취요원(2명)
---	------	-------	--

※ 당명 변경(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 당적 변경(김용석 위원, 새누리당⇒국민의당)

※ 위원 개선에 따라 8. 4자로 유용(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추가되었음.

※ 행정직원 중 의사지원팀장(최병천⇒임학본), 교육지원팀장(임금석⇒김성수⇒임학식), 행정주무관(양순철⇒김진욱⇒조원상, 강선동⇒김선철, 김병규⇒신경미, 오승찬⇒이재석, 박수진⇒김은선), 시간제 임기제(윤지민⇒문은영, 김용우⇒배재현), 워드요원(최선영⇒백경하) 등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고, 입법조사관(정진국, 최원종), 시간제 임기제(안진주)가 신규 임용됨에 따라 추가되었음.

II.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개황

1. 조사목적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하나고등학교 학생 모집,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 하나고등학교가 점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학교부지 임대차 계약상의 대부료를 적용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조례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부담 과다지급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장학금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내용, 학생모집, 기간제교사 채용 등 학교운영의 문제점 및 그 밖의 하나고등학교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2. 조사범위

-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
- 하나고등학교 부지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하나고등학교 학생모집, 장학금 지급, 수업료 등 학교운영 사항
- 하나고등학교 교사 채용 관련 사항
- 그 밖에 학교법인 하나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기간

○ 2015. 4. 23 ~ 2016. 10. 22

일 정	대상기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고
2015. 4.23. ~ 2015. 8.31.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 서류확인 및 보 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검증, 전문가 검증 - 증인·참고인 등 출 석·신문 및 결과보 고서 작성 등	
2015. 9. 1. ~ 2015. 9.30.	학교법인 하나고등학교	· 교육위원회 회의실 · 하나고등학교 현장		
2015.10. 1. ~ 2015.10.22.	SH공사 등 관련부서	교육위원회 회의실		
2015.10.23. ~ 2016. 4.22.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하나고등학교	교육위원회 회의실		조사 기간 연장
2016. 4.23. ~ 2016.10.22.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법인 하나고등학교	교육위원회 회의실		조사 기간 재연장

※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 현장검증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됨.

4. 조사방법

-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 조사와 관련된 기관·현장 방문조사
- 조사위원회가 조사 진행 중 진실규명을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함
-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조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생본부, SH공사, 서울장학재단 등 사업 관련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등 사업관련 부서
-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및 외부기관

6. 위원회 활동경과

구분	일시	의사일정	비고
제1차 위원회	2015. 5.6(수) 11:00	1. 위원장 선임 ○ 이정훈 위원(새정치민주연합) 2. 부위원장 선임 ○ 김경자 위원(새정치민주연합) ○ 김용석(서초) 위원(새누리당) 3.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차 위원회	2015. 7.13(월) 10:00	1. 하나고등학교 조사관련 주요현황 보고 ○ 보고자 : 서울시, SH공사, (재)서울장학재단 2. 하나고등학교 조사관련 질의·답변 ○ 참석대상자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SH공사 사장 변창흠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 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제3차 위원회	2015. 7.14(화) 10:00	1. 하나고등학교 조사관련 주요현황 보고 ○ 보고자 : 서울시교육청 2. 하나고등학교 조사관련 사항 질의 답변 ○ 참석대상자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 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p>제4차 위원회</p>	<p>2015. 8.17(월) 11:00</p>	<p>1.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p>	<p>○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p>
<p>제5차 위원회</p>	<p>2015. 8.26(수) 10:00</p>	<p>1.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및 질의 답변 ○ 양종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재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 오대수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담당 서기관 정승운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용석홍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담당 서기관 구자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배범규 하나학원 사무국장(행정국장) 이태준 하나고등학교 교장 김진성 하나고등학교 초대교장 정철화 하나고등학교 교감 이혜선 하나고등학교 교육행정팀장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p>	<p>○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p>
<p>제6차 위원회</p>	<p>2015. 8.27(목) 10:00</p>	<p>1.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및 질의 답변 ○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 박영섭 서울시 경영기획실 학교지원담당관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이성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김정태 학교법인 하나학원 초대이사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안병만 전 교육기술부 장관 불출석 ※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시장 불출석. 과태료 부과 의결</p>	<p>○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p>
<p>제7차 위원회</p>	<p>2015.11.26(목) 14:10</p>	<p>1.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p>	<p>○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p>

<p>제8차 위원회</p>	<p>2015.12.9.(수) 10:00</p>	<p>1.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청취 2.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및 질의 답변 ○ 권길주 하나금융그룹 전무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희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영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대신하여 권길주 하나금융그룹 전무 참석 ※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배범규 하나학원 사무국장 불출석</p>	<p>○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p>
<p>제9차 위원회</p>	<p>2016. 8. 8.(월) 14:00</p>	<p>1. 2017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요강(안) 관련 현황 보고 2.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질의 답변 ○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무수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p>	<p>○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p>

Ⅲ. 행정사무조사 활동내용

1. 문서검증(자료조사)

가. 부지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2006년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 입찰 참가자 현황 및 입찰 결과 상세내역
- 부지임대차계약 당시(2009년1월23일) 관계공무원명단
(시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 서울시가 하나고 이외의 학교 부지를 임대한 경우의 임대차계약서
-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당시(2008.4.1615시~17시) 회의록 일체
- 하나고 법인설립 허가신청 관련 자료일체 및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보고자료
- 하나고 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 하나고 부지 임대차 및 매입 관련 서류 일체
- 하나고 설립 당시 건축설계도를 포함한 건축 관련 자료
- 하나고 설립 관련 대내외 공문을 설립절차에 따라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 하나고 설립 인·허가 관련 서류일체
- 하나고등학교 설립시 학교용지 변경 결정에 관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관련 자료
- 학교설립 인·허가 당시(2008년12월29~30일) 관계 공무원 명단
(교육감,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사무관, 담당 주무관)
- 하나고 시설별 계약방식, 공사금액(입찰인 경우에는 발주 금액, 낙찰액),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 목록
- 하나고 시설별 설계용역 일수(착수일자 및 완료일자), 시설공사 일수(착공일자, 완료 일자, 준공검사 일자)
- 하나고등학교 전체 학교시설 현황

- 학교시설공사 표준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산정 기준

나. 이사회 회의록 관련 사항

- 이사회 개최시 공고문
- 하나학원 등기 이사 날인 신고서
- 학교법인 하나학원 초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 승인 내역
-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 관련 사항

-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당시(2010년6월30일) 관계 공무원 명단(교육감,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 담당 사무관, 담당 주무관)
-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 비교표
-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율형 사립고와 당초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 비교표

라. 전입금 중단 관련 사항

- 2014년 기부금을 통한 법인전입금 충당시 법인회계로 기부하도록 약정하는 관련서류
- 하나고 법인전입금 관련한 법인회계통장 사본
- 하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 하나고등학교 결산보고서
- 하나고등학교 설립 이후 법인전입금 입금내역
- 하나금융그룹의 출연 중지 이후 연도별 기부금 명세서
-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 확인서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에 관한 관련 상세 법 규정과 교육부 지침 또는 관련규정

마. 학생모집 관련 사항

- 최근 3년간 하나고 신입생의 출신 지역 및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 대학내역
- 하나고등학교 개교 이래 자퇴한 학생에 대한 현황자료 및 결원에 대한 총원현황
- 하나고등학교 연도별 신입학 전형 합격생 및 불합격생의 서류점수와 면접 점수가 합산된 최종합격자 명단
- 입학사정용 엑셀파일(법정보전연한 5년 해당분)
- 하나고등학교 전편입시 선발기준 및 모집현황
-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 자료

바. 장학금 관련 사항

- 2011~2014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
-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과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현황
-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원되는 장학금 유형과 지원금액
- 서울시 공사립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현황
- 서울장학재단 고교분야 장학금 지원 대상 중 일반고의 지원금액과 자율고의 지원 대상 및 지급금액
-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변경된 학교(6개교)에 대한 각 지역 자치단체들의 장학금 규모, 대상 및 지급 현황
- 장학생 선발시 기타저소득에 대한 세부내역
- 장학생 선발시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실태조사의 세부내역
- 장학생 선발시 차상위(한부모보호)지원시 지원자의 소득분위에 대한 분류 기준
- 최근 3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과 금액 및 지급비용 명목

- 하나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원 주체와 금액 산출 근거 및 지급 내역
- 하나고등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 산출 근거 자료
- 하나고등학교와 서울시의 장학금 소송과 관련한 자료
- 현재 장학재단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에 대한 장학금의 유형 및 금액과 대상자 목록

사. 기간제교사 관련 사항

- 2012년 이후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 2012년 이후 교원채용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 2012년 이후 년도별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 각 교원 채용시기별 공고문
- 개교 이래 하나고 교사(정교사, 기간제교사 불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과 징계 내역 일체
- 교원 신규채용 공고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
- 하나고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사 징계 내역 및 사유
- 하나고 교사 임용 현황(개교부터 현재까지)
- 하나고등학교의 현재 재직교사의 신규채용 관련자료

아. 학교폭력 관련 사항

- 2012년 이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자치위원회)회의 현황표
-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용(학교 자체 및 서울시교육청)

자. 기타

- 감사결과보고서 원본
- 하나고 개교(2010년) 이후 하나고에 대한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 하나고등학교 회계 감사 실시 후 감사보고서
- 하나고 관련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현황
- 하나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일체서류(사본)

2. 증인 및 참고인 조사

가. 제1차 증인채택

-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가관련, 부지임대차 계약 및 장학금 지급 관련, 자율형사립고 전환 관련, 학교(법인) 운영 관련과 학생 모집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행정사무조사관련 대상으로 증인을 채택함.
- 출석일시 : 2015년 8월 27일(목) 10:00, 2015년 8월 28일(금) 10:00
-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출석대상(총 21명)

연번	소속 / 직위	성명	출석일시	출석여부	비고
1	전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15.8.27(목) 10:00	불출석	부지임대차 계약 및 장 학 금 지급 관련
2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남 승 희	'15.8.27(목) 10:00	참석	
3	현 서울시 종로구 부구청장 [전서울시 경영기획실 학교지원담당관]	박 영 섭	'15.8.27(목) 10:00	참석	
4	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 승 유	'15.8.26(수) 14:00	참석	
5	전 서울시교육감	공 정 택	'15.8.27(목) 10:00	불출석	학교설립 인가관련
6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양 종 만	'15.8.26(수) 10:00	참석	
7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	김 재 문	"	참석	

8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담당 서기관	오 대 수	"	참석	
9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15.8.27(목) 10:00	불출석	
10	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전)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성 삼 제	'15.8.27(목) 10:00	참석	
11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이 성 희	'15.8.27(목) 10:00	참석	자율형 사립고 전환 관련
12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 승 운	'15.8.26(수) 10:00	참석	
13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담당 서기관	용 석 흥	"	참석	
14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구 자 문	"	참석	
15	현 하나학원 사무국장(행정실장)	배 범 규	"	참석	학교(법인) 운영 관련
16	하나학원 초대이사 [현)하나고등학교 교장]	이 태 준	"	참석	학생모집, 기간제교 사 채용 관련 등
17	하나고등학교 초대교장	김 진 성	"	참석	
18	하나고등학교 교감	정 철 화	"	참석	
19	하나고등학교 교육행정팀장	이 혜 선	"	참석	
20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 경 원	"	참석	
21	하나학원 초대이사 [현)하나금융지주 회장]	김 정 태	'15.8.27(목) 10:00	참석	학교설립 인가관련

※ 오세훈(전 서울특별시시장) 불참사유서 미수용에 따라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나. 제2차 증인선택

- 하나고등학교 설립·운영 및 특별감사 전반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기 위해 증인을 채택함
- 출석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10:00
-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 출석대상(총 8명)

연번	소 속	성 명	기 출석여부	출석여부인	비 고
1	현)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승유	5차 (8.26)	불출석	하나 고등학교 설립·운영 및 특별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2	현)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학원 초대이사)	김정태	6차 (8.27)	대리 출석	
3	현)하나학원 사무국장(행정실장)	배범규	5차 (8.26)	불출석	
4	하나고 교사	전경원	5차 (8.26)	참석	
5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형남	미출석	참석	
6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3차 (7.14)	참석	
7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3차 (7.14)	참석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	2차 (7.13)	참석	

※ 김정태(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권길주(하나금융그룹 전무) 대리 출석

※ 김승유, 김정태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검찰수사 중임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출석

IV. 행정사무조사 실시 내용(주요지적사항)

1. 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

○ 하나학원 자립형 사립고 지정 신청

- 자립형 사립고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2002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 하였음.
- 그러나 2008년 12월 30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은평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사전협의안 통보」 공문을 송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12월 31일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인가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에 따라 인가(예비)함.
- 이와 같이 하나고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2010년 2월 종료되었음에도 2008년 12월 31일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되었고, 2010년 3월 개교하였기 때문에 단 하루도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운영 된 적이 없음.

○ 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

- 자립형 사립고는 법적 근거 없이 시범운영된 것으로 2008년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르면 자율학교의 지정의 경우에만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법령상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교과부와 협의하는 것이고,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교육감이 대상학교를 추천하여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함(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자율학교 협의와 자립형 사립고 지정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자율학교 협의·지정을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음.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검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⑥ 삭제 <2004.2.17.>

⑦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⑧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교설립 인가

-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에 2009년 8월 12일에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8월 2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하나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음. 그러나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4층교사 건물 중 2층 골조 공사 중이었으며,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수·학습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설립인가를 받음에 특혜 의혹이 있음.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허가 경과

일 자	발신청(수신처)	내 용
2001.08.08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감)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방안 홍보
2007.07.02	학교법인 봉암학원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2007.09.14	서울시교육감	학교법인 봉암학원 설립 허가 (가칭)대교고등학교 - 은평구 은평뉴타운 3-2지구 연서로 서측 단독 주택부지 고-9 (26,446㎡)
2007.12.24.	학교법인 봉암학원	대교 은평뉴타운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지위 반납
2008.02.18	서울특별시시장	강북지역 뉴타운지구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 재공고 (서울시 공고 제2008-3336호)
2008.04.10	학교법인 봉암학원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2008.04.24	서울시교육감	학교법인 봉암학원 해산 인가 및 청산인 취임승인
2008.04.30	서울시교육감	하나금융지주 은평뉴타운 자사고 우선협상자 지정
2008.09.30	(주)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승유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2008.10.31	서울시교육감	학교법인 하나학원 설립 허가 - 은평구 진관외동 129(26,446㎡)
2008.11.10	학교법인 하나학원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신청서 제출

2008.12.02	서울시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학교 관련 협의
2008.12.11	서울시교육감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 행정예고
2008.1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은평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사전협의안 통보
2008.12.31	서울시교육감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인가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2009.01.23	서울특별시 학교법인 하나학원	은평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
2009.02.10	서울시교육감 (학교법인 하나학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통보
2009.08.12	학교법인 하나학원 (서울시교육감)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2009.08.21	서울시교육감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가
2010.01.28	서울시교육감	임시사용승인서 교부(하나고)
2010.10.13	서울시교육감 (학교법인 하나학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준공 통보

2. 부지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 부지 임대차계약서에 장학금 지급, 학생모집 등 학교운영 관련 사항 포함 문제

- 기본적으로 부지 임대차계약은 서울시의 소관업무로서 부지에 대한 사용·임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은평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학사운영에 대한 승인 및 관리·감독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월권하는 내용인 학생모집방법, 장학금 지급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추후 하나고등학교의 불합리한 학교운영을 고착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음.

○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및 재공고시 차순위자 선정 문제

- 2006년 6월 은평 뉴타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시 (주)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이를 반납한 바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선

정자 이외에 차순위자를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음.

**‘길음-은평 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백지화 및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등
고교졸세우기 정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2008. 3. 11 보도자료 中 첨부자료2)

▶ 서울시 뉴타운에 자사고 추진방침 발표(2003.9)

▶ 자사고 설립계획발표(2006.1.31) 이명박 시장은 “서대문구 아현동 뉴타운, 길음동 8구역, 은평뉴타운(은평 3지구) 등지에 자사고를 설립하고 2006. 3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재단 법인을 공모하며, 2008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을 계획”임을 발표

▶ 1차 우선협상대상자 공고(2006.6.26)

서울시는 강북 지역인 은평 뉴타운과 길음 뉴타운 2곳에 자립형사립고 1개교씩을 설립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모집 공고.

○2006.7.27 (주)대교와 건국대, 라성그룹 정형기 장학재단 등이 서울 은평, 길음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원한다고 서울시에 신청

○2006.9.10 서울시는 은평·길음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대교와 라성정형기 재단을 각각 선정

※ 2006.12.11 서울시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위해 교육지원 4개년계획 발표. 2006 천375억 원 투입 은평뉴타운(920억원)과 길음뉴타운(454억8천만원)에 학교 부지 매입한 뒤 자사고 재단에 장기저리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각 방침.

▶ 2차 우선협상대상자 공고(2007.6.21)

○2007.4. 라성 정형기재단 길음뉴타운 자사고 설립포기

○2007.6.21. 서울시는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지역내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을 7.31까지 모집 공고.

▶ 3차 우선 협상대상자공고(2008.2.18)

○2007.10.12 길음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신청공고에 서울 한가람고등학교가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취소

○2007.2.18 (주)대교 봉암학원 은평뉴타운 자사고 설립포기

은평뉴타운 3-1지구와 길음뉴타운 8구역에서 ‘강북뉴타운지구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운영을

위한 학교법인 모집' 공고

▶ **3차 우선 협상대상자 현황 발표(2008.3.11)**

(표) 서울시 지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및 선정 경과

공고횟수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비고
1차(2006.6.26)	대교 선정	라성건설 선정	
2차(2007.6.21)		협상대상 신청자 없음	라성건설 자사고 포기
3차(2008.2.18)	대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반납	한가람고 신청 취소	신청기간(2.18~3.10)

○ **임대요율(임대료 기준액의 0.5%)의 적정성 문제**

- 은평 뉴타운의 우수학교 설립(시장방침 제802호)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라 임대료 요율을 1천분의 5로 정하였음.
- 그러나 해당 법률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시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고등학교는 설립 당시 은평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형태가 아닌 자립형사립고로 해당 법률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형태였음. 더욱이 하나고 1천분의 5의 임대요율 적용 조항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하나고 학교 설립 이후인 2011년 7월 28일 삭제됨.
- 또한 2008년 2월 18일 '강북지역 뉴타운지구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임대료는 학교부지 공급 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과정 중에 서울시가 부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0.5%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서울시는 실제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최저 임대요율인 0.5%를 적용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하나학원에게 약 30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것임 (651억×5%÷33억이 0.5%로 변경되어 약 3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특혜 의혹이 의심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0.29.]

제26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08.9.30.]

제19조 (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삭제 2011.07.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시와 하나학원이 체결한 부지 임대차계약 제5조는 학교법인 운영 및 학교설립계획 관련 이행사항을 정하면서 장학금 지급,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강남3구 학생의 모집 제한 등을 과도하게 명시하고 있음.
- 특히 강남3구를 전체 25개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12%(3/25)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 학생모집을 20%로 높게 제한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SH공사의 과도한 기탁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

- SH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0억원을 기탁한바 있고, 그 중 약 18억원이 서울시장학재단을 통해 하나고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기탁금과 관련한 근거가 없으며, 당시 SH공사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기탁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했다 판단됨.

○ 학교 건물 증축 기간의 적정성 문제

- 하나고등학교는 2009년 1월 23일 부지 임대차계약, 2009년 3월 2일 기공식, 2010년 3월 2일 개교, 2010년 10월 준공 등 부지 임대차계약에서부터 개교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내에 학교설립이 완료되었음.
- 통상 건축설계 후 인·허가 등의 증축 절차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하나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미리 학교설립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음.

3. 이사회 회의록 관련 사항

○ 학교법인 하나학원 창립총회의 위법성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르면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자필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도장의 경우에도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음.
- 이에 해당 창립총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실제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동 회의시 논의된 내용이 사실인지, 또한 임원 출석이 사실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이사회 회의록 이중작성의 위법성

- 하나학원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이사회 회의록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이 동일 회차의 이사회 회의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밝혀짐.
- 또한 동일한 날짜의 회의록임에도 자료에 따라 각각 인장의 위치가 다른 점이 발견된 바 있음에 이사회 회의록의 의결 내용 및 참석자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4. 자율형사립고 전환 관련 사항

○ 2010년 6월 30일 하루만에 이루어진 자율형 사립고 전환

- 하나고등학교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이 2010년 2월 종료된 후에도 자립형사립고 형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0년 6월 30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신청에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협약과 통보 및 고시까지 2010년 6월 30일 단 하

루만에 이루어진 바 있음. 당시 대부분의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데 최소 수십일이 소요되었다는 점, 그리고 7월 이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자립형사립고가 존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굳이 6월 30일에 하나고의 자율형사립고의 전환이 서둘러 이루어진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일 자	발신청(수신처)	내 용
2010.06.30	교육과학기술부(서울시교육감)	자율형 사립고 관련 질의 사항 회신
2010.06.30	교육과학기술부(서울시교육감)	자율형 사립고 지정 관련 질의 회신
2010.06.30	하나고등학교(서울시교육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
2010.06.30	서울시교육감(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사전협의
2010.06.30	교육과학기술부(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 결과 알림
2010.06.30	서울시교육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 지정·고시

○ **자사고 전환시 관련 서류 비제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약서만으로 절차 생략**

-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 6월 30일 자율형사립고 전환 지정·고시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면서도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요약서만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 27.) 부칙 제3조(시범 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 중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에 한하여 전환시 필요서류의 약식 제출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시 교육감이 지정한 하나고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청은 요약서만으로 학교 전환(지정)신청을 승인해준 바 있음.

○ 입학전형 부적정에도 자율형사립고 지정 유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5호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하나고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과 8월에 평가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결과 자사고 지정이 유지되었음.
- 그러나 하나고의 경우 지난 2013년 특정감사 결과 “신입생 입학 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고, 설립특혜 등으로 적지 않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5. 전입금 중단 관련 사항

○ 하나금융의 출연금 중단 및 기부금 내역 불분명

- 부지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10년부터 매년 약 20억 원 이상 전입하여 동 규정이 충족되고 있었으나 2013년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하나금융으로부터 학교법인으로의 출연이 중단된 상태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매각을 통해 이를 충족시켰고, 2014년에는 학교법인에서 거두어들인 기부금으로 이를 충족하였음.
- 부지 임대차계약서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에 따른 내외여건의 변화에도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그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긴 점, 또한 기부금이라는 불안정하고 지속적이라고 할 수 없는 지원을 통한 법인전입금의 전입형태는 부지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2014년에만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753건 27억 8310만원의 기부금이 걷힌 바 있는데, 그 기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음. 1) 하나고가 임직원자녀특례입학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2) 기부자 중 하나금융과 갑을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 등 대가성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문제

- 하나임직원 전형을 유지함에 따라 하나금융 그룹으로부터 학교 법인으로 출연이 중단되는 상황임. 그에 따라 하나 학원은 자체적으로 학교전출금을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에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133억 83백만원(주식단가 21,400원/16.1.31기준) 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함.
- 그러나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재산으로부터의 발생된 운영 수익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욱이 하나임직원전형 재학생이 존치하는 한 하나금융 그룹으로부터의 출연이 중단되므로 수익용기본재산이 소진할 경우 대책이 전무함.
- 따라서 하나금융의 출연금 중단사유인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할 것임.

6. 학생모집 관련 사항

○ 신입생 선발의 문제점

- 하나학원의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12월19일)에 따르면 2015학년

도 신입생 모집결과 1,150명의 지원자 중 다수가 만점자여서 면접대상자가 97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모집인원 20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2차 면접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정한 면접평가가 중요하다 할 것임.
- 한편 하나고등학교 신입생의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특별히 남녀 선발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았음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이는 하나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성적조작을 통해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하나고등학교 신입학전형 중 1단계 서류전형 및 2단계 면접전형 과정에서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일부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로 선정한 것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1월 17일 신입학 및 전·편입학생 입학전형자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6년 10월 현재까지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임.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 신입학 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2011학년도에는 지원자 28명에게 0.10점~1.70을,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 25명에게 0.10점~4.93점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부여 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모든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5점을 일괄 부여하였음
- 2013학년도의 경우,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21명에게 0.14점~12.20점을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심층

면접전형에서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13명에게는 -4.25점~-0.02점을 부여하여 불합격시키고, 지원자 16명에게는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0.05점~2.45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로 선정하였음

2. 전·편입학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시된 12회의 전·편입 전형 중 10회의 전·편입 전형 모집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전·편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하였음
- 2011년 3월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8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켰고, 2011년 8월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7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 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전·편입 전형을 실시하였음
- 성적조작 등의 정황에 근거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음

○ '하나임직원자녀전형' 문제점

-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일체의 출연이 금지되었으나 2013년 7월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융사가 계열사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이 경우 출연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 금지되게 되었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고가 임직원 자녀를 선발하는 전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학원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하나학원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하면 '대가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출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하나학원은 2018학년도까지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2017학년도 하나고등학교 모집전형에 임직원자녀특별

전형을 허용하였음.

은행법

[시행 2009.10.10.] [법률 제9784호, 2009.6.9., 일부개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9.>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7.8.] [대통령령 제24658호, 2013.7.8., 일부개정]

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으로 하여금 제20조의5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3.7.8.]

○ 학생모집방법의 모순

- 부지 임대차계약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하고,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학생모집의 원칙은 서울시라는 광역단위임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서에 단서를 통해 하나금융임직원자녀의 경우 전국단위로 선발하도록 승인한 바 있음. 이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승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군인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전국단위 모집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지 임대차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하나금융임직원 자녀의 전국단위 모집 규정이 어떠한 이유로 지정서에 삽입되게 되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참고로 부지 임대차계약서에 학생모집 사항을 삽입한 것 자체가 원초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이미 동 계약서에 학생모집 사항이 명기되었다면 계약서상 서울시 단위로 모집하기로 한 학생모집방법에 대해 현재의 전국단위모집은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음(제5조제2항을 통해 “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인가 및 학생선발방법 등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조정범위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음).

7. 장학금 관련 사항

○ 학생정원 15% 장학금 지급

- 부지 임대차계약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학생 정원의 15%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서울시는 2010년 하나교 개교 이래 학생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1인당 6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주고 있으나, 서울시내 자사고 25곳 가운데 15%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곳은 없음.
- 한편 서울시는 2014년도에 장학금 4억 8천 6백만원 중 1억 6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3억 2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도 3억 4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1억 4천 4백만원만 지급함.
- 부지 임대차계약상 장학금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15%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뿐만이 아닌 학교장 추천에 따른 가계곤란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90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이는 일반 자율형사립고의 장학금 지원이 평균 10명 미만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의 범위 등에서 과도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자사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총액을 다른 자사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인당 지급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장학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지원) 제3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학교부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근거가 없었으나, 2011년 12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미 교육청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 할 수 있음.

8. 교사 임용 관련 사항

○ 기간제 교사, 정교사 채용시 문제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르면 신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법 제53조의2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채용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3항),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한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하나고등학교는 2010학년부터 2014학년도까지 총 10명(2011학년도 1명, 2013~2015학년도 각 3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정교사로 채용함.
- 또한 기간제교사를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교사로 채용하였으면 서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처럼 정교사 공개채용 인원에 포함 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함.

○ 신규교사 채용시 문제

- 2010학년부터 2014학년도까지 신규교원의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과목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채용인원만을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채용 인원을 알 수 없게 하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교사채용 과정을 알 수 없도록 함.
- 또한 2015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시 해당 과목 담당교사가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였고, 채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서류 전형을 임의로 평가함.

9. 학교폭력 관련 사항

○ 학교폭력 관련 사항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2011년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4~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당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킴으로써 사건을 종료시킨 것은 법률 위반임.

V. 종합의견

-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학교부지 임대차 계약상 대부료율 적용의 적절성과 더불어 서울시의 장학금의 과다지급 및 학생 모집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구성되어 지난 1년간 일련의 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
- 지난 2015년 5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2일까지 9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조사 등을 통한 문서검증,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조사 과정에서 ① 설립 인·허가 관련 특혜의혹 문제, ②부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특혜의혹 문제, ③ 이사회와 관련한 회의록의 위법성 의혹, ④ 학교 인·허가 과정상의 특혜의혹, ⑤ 법인전입금 중단 및 학교 운영의 부실 문제, ⑥ 학생모집과 관련한 부정선발 의혹, ⑦ 장학금 관련 특혜 의혹, ⑧ 교사임용 관련 위반 문제, ⑨ 학교폭력 관련 은폐 의혹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음.
-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과 관련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음.
이에 따라 관련자 7명에 대하여 파면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총 155,317,112원에 대하여 회수 및 반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성적 조작 의혹 등 7건(9명)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학교법인 하나학원) 일부승소판결(2016.02.03. 2015가합519452)을 하였고, 현재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으나 (2016.02.17.) 1차 변론 후 재판부에서 조정 제의를 하였음. 그러나 1차 조정이 불성립(2016.09.02.)되어 현재 재판부에 의해 화해권고결정 이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2016.10.05.).

- 그 밖에 하나고의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은행법 개정에 따른 전입금 불입으로 인한 학교재정 악화로 수익용기본재산(현금) 처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차입(15억원)을 통하여 당장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였고, 법인전입금 중단이 원인이 된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은 매년 점차적으로 선발 비율(2017학년도 13%, 2018학년도 6%, 2019학년도 폐지)을 줄여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설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학교(법인)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과 교사 채용 및 학교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소송중인 「하나고 장학금 지급 청구의 소」는 추후 판결의 결과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당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학교유형이 변경되고, 임직원자녀전형을 통한 전국 단위 학생 모집과 일반계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재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붙임】 기관보고

1. 서울특별시

가. 하나고 일반현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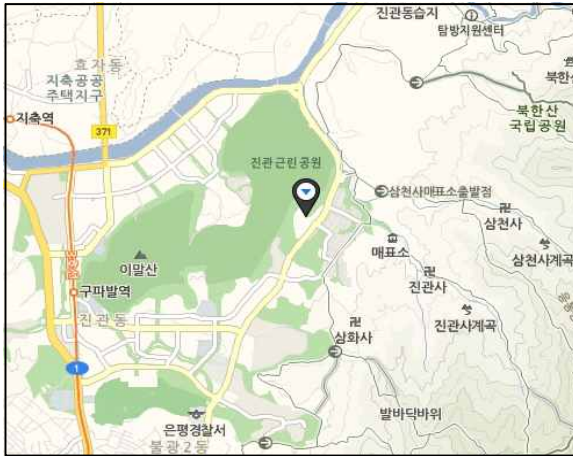
- 학교위치 : 은평구 진관동 129 일대
- 부지면적 : 26,446㎡(8,000평)
- 설립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특례)
- 설립인가 : 2009. 8. 21 (※ 2010. 3. 2. 하나고등학교 개교)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임대기간 : 50년('09. 1.23 ~ '59. 1.22)
 - 임대료 : 390백만원(당시 조성원가의 1000분의 5)
 - 임대요금 : 1000분의 5(서울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7조의2 제①)
- 학생정원 : 600명(각 학년별 200명)
- 연간학비 : 13백만원/년(등록금 540만원, 기숙사비 600만원, 기타 160만원)

장학금 지급현황

- 근거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임대차협약 제5조(정원의 15% 이상)

연도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명 (지급액)	30명 (162백만원)	60명 (324백만원)	90명 (483백만원)	90명 (486백만원)	81명 (324백만원)	90명 (144백만원)

위치 및 전경



위 치



전 경

나. 설립취지 및 추진경위

설립취지

-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공간구조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인 교육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
- 우리시 뉴타운사업 추진시 학교부지가 확보된 은평 뉴타운지역 등에 당시 학부모,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자사고 등 우수학교 설립 우선 추진

추진경위

- '03.11.18 : 뉴타운지역내 우수학교 15개교 설립계획 수립
- '05.12. 5 : 시장-교육부장관-시교육감 자사고 설립 합의
- '06. 6.16 :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 '06. 9. 8 : 학교운영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봉암학원)
- '07. 9.14 : (주)대교 학교법인(봉암학원) 인가(시교육청)
- '07.12.27 : (주)대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반납
 - 대내·외적 학교설립환경 변화 및 언론의 부정적 비판 시각에 대해

부담

- '08. 2.18 :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제공모
- '08. 4.23 : (주)하나금융지주, 은평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08.10.31: 학교법인 하나학원 설립허가
- '08.12.31: 학교설립 예비인가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
- '09. 1.23 : 학교법인 하나고-서울시 부지임대차계약 체결
- '09. 8.21 :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가
- '10. 3. 2 : 하나고등학교 개교
- '10. 6.30 : 하나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호(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다. 장학금 관련

1) 장학금 지원 축소

지원 현황

- 지원근거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협약서 제5조
 - “하나학원”은 학교법인 및 자사고 설립·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학생 정원의 15%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학생정원 15% 장학금을 지원한다.
 - ▶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은 8:2 이상 유지
 - ▶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 미만 모집
- 서울시 : 매년 학교 정원의 15% 장학금 지원
 - 대 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 학교장 추천자 등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총액	162,000	324,000	483,300	486,000	324,000	144,000
지원인원	30명	60명	90명	90명	81명	90명
1인당지원액	5,400	5,400	5,400	5,400	4,000	1,600

○ 기타 지원사항

- 자치구(중앙정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훈대상자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교 육 청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차차상위
 - 학교운영비, 수업료 지원

□ 장학금 지원 논란제기

○ 타 자율형 사립고와의 형평성 문제

- 2010년 이후 자율형사립고가 25개교로 늘어나는 등 제도가 변경되었고, 타 자사고에 대한 시장학재단 지원은 학교당 최대 10명 미만이나, 하나고에 대해서만 15%인 90명 편중 지원

○ 일반고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사회적 형평성 문제)

- 하나고 1인당 연간 경비는 13백만원으로 일반고의 3~4배 수준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기숙사비까지 지원함은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필요)

□ 축소 경과

-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최저 임대료 부과와 장학금 지원이 일반고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의 소지가 있어, 이의 시

정을 요구하는 언론과 시의회의 지적 계속 거론

- '12. 4.23. 제237회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하나고 특례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13.12.20. 제250회 시의회 예결위에서 하나고 장학금지원 예산 삭감 결정(486백만원→324백만원)
 - 장학금 축소지원후 하나재단 장학금 지원 원상회복 요청

- '14.12.20. 제257회 시의회 예결위에서 하나고 장학금 예산삭감 결정(486백만원→144백만원), '15. 3월 하나고 장학금 축소지원에 대한 협의
 - 학교부지 임대협약 제15조(변경)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로 인한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의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음
 - 하나고는 축소된 장학금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청, 2015. 3.19.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룸

2) 장학금 축소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사항

청구개요

- 사 건 명 : 장학금 지급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452)
- 당 사 자
 - 원 고 : 학교법인 하나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 소 가 : 648,000,000원
- 접 수 일 : 2015. 3. 31

청구내용

- '09. 1.23. 부지 임대차 계약체결 시, 장학금 지원기준은 서울시 15%, 하나고 15% 각각 지급을 약속하고, '10~'13년까지 이를 이행하였으나,
- '14년 이후 648백만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지연배상금 20% 및 삭

감분 지급 청구

○ '15. 6.24. 하나고 소송관련 1차변론

※ 1차 변론 : 원고(하나학원)측 소송 쟁점내용 및 피고(서울시) 입장 설명

- 하나학원 :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15%의 장학금 지급을 이행하여 줄 것 주장
- 서울시 : 하나학원이 설립당시는 자립형 사립고였으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등이 지원되므로 더 이상 장학금 지급의무가 없음

○ '15. 7.22 : 하나고 소송관련 2차변론

□ 대응 방안

- 원칙적으로 하나고측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력 대응
- 장학금 지급규모 등 타 자율형사립고와의 형평성 문제, 학교부지 임대료 효율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

장학금 지원축소 관련 추진경과

- '11.11.29 : 제235회 본회의시 하나고 장학금 과도지급 시정질문(김명신 의원)
- '11.12. 5 : 제235회 재경위 하나고 특혜 의혹 질의(김용석 의원)
- '11.12.17 : 하나고 관계자에게 장학금 관련 서울시 입장 전달
- '12. 4.23 : 제237회 본회의시 하나고 특혜 언급(김명신 의원)
- '12. 5. 1 : 시관계자, 임대계약 개정협의차 하나고 방문 학교장 면담
 - 장학금 중복지원, 타 자율형 사립고·일반고와의 형평성, 과도한 저가임대료 등 임대계약 개정에 대해 논의

- 50년 임대계약 체결한지 3년인데 개정시도에 대해 반발, 시가 의회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대변해줄 것 요구
- '12. 6. 5 : 시, 장학금 지원규모 축소협의를, 2차 하나고 방문 상임이사 면담
 - 시의회, 언론으로부터 하나고 특혜의혹 점점 심화, 장학금 지원규모 조정 불가피성 설명, 장학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전면적 개정이 아닌 단계적 개정 논의
 - 임대차계약체결 3년에 불과, 개정 시기상조, 장학금 규모 조정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에는 공감
- '12. 7.11 : 시 교육협력국장, 하나재단 상임이사(윤교중)와 간담
- '12.12.11 : 하나고 장학금관련 임대차계약 갱신 추진계획 수립
- '12.12.14 : 하나재단 이사회에 장학금 지원규모 조정안건 상정, 부결
- '13. 3.13 : 하나재단 사무국장 서울시 방문, 장학금관련 시 입장 전달
 - 학교법인이 너무 완강하게 협약수정 거부, 시의회에서 예산승인하지 않을 시 장학금지급이 불가능한 실정 설명
 - 장학금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고된 유치조건, 하나고만의 특혜는 아님. 하나고 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요구(현장방문 등)
- '13. 6.11 : 서울신문, 임대료 특혜논란 보도
- '13.11.11 : 하나재단 사무국장 학교지원과장 면담
- '13.12.20 : 제250회 시의회시 하나고 장학금 예산 삭감(486백만원→324백만원)
- '14. 6.16 : 하나재단 장학금 지원규모 원상회복 요청 방문
- '14.12.20 : 제257회 시의회시 하나고 장학금 예산 삭감(486백만원→144백만원)
- '15. 3. 6 : 하나재단 이사, 사무국장 평생교육정책관 방문 면담
 - 장학금축소에 대한 협의, 재단에 계약변경 불가피함 건의 요청

라. 임대료 관련

임대개요

- 임대기간 : 50년('09. 1.23 ~ '59. 1.22)

○ 임대요율 : 0.5%

※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유치 임대료 비교

- 용산국제학교('06) 무상, 덜위치칼리지('10) 1%, 드아외트스쿨('12) 1.5%

□ 임대료 산출근거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7조의2

-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 임대요율 및 임대료 부과기준

- 임대요율은 임대료 기준액의 0.5% 원칙(매년 갱신)
- 임대료 기준액은 최초 651억원으로 하고, 이후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기준액에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

○ 임대료 산정방법

- 전년도 임대료 기준액×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최대 3%)×임대요율(0.5%)

▶ '13년 통계청 발표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1.3% 적용(법률자문 결과 반영, 학교지원과-1818('13.2.27))

※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 임대요율(임대계약서)/산정된 임대료에 부가세(10%) 합산 부과

○ 임대료 부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임대기준액	물가 상승률	임대 요율	부 과 액			세입회계
				총 계	임대료	부가세	
'09년도	65,100,000		0.005	358,050	325,500	32,550	일반회계(세외수입)
'10년도	66,922,800	2.8%	0.005	368,075	334,614	33,461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수입)
'11년도	68,863,561	2.9%	0.005	378,750	344,318	34,432	
'12년도	70,929,468	3.0%	0.005	390,112	354,647	35,465	
'13년도	72,489,916	2.2%	0.005	398,694	362,449	36,245	
'14년도	73,432,285	1.3%	0.005	403,877	367,161	36,716	
'15년도	74,386,905	1.3%	0.005	409,128	371,935	37,193	

□ 법령검토 결과

- 하나고와의 임대료 책정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 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등 특별법을 적용하여 적법
- ※ 일반적 임대료 책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

〈 관련 법령 〉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6항(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 제2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1항(교지의 임대기간 등)
 -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3항(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7조의 2(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따라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 향후 계획

- '부지 임대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하나학원과 상호 지속적 협의 추진, 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및 변경하도록 노력

2. SH공사

가. 은평지구 개발계획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 개발면적 : 3,492,567m²

○ 주택건설 : 17,464세대

(분양 10,293세대, 장기전세 4,025세대, 국민임대 2,889세대, 단독 257세대)

○ 사업기간 : '04.02.25 ~ '15.12.31(사업기간 1년 연장 예정)

추진경위

○ 2004.02.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5.12.30.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7.10.1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등학교9(하나고등학교) 부지 결정]

향후계획

○ 2016.12. : 은평지구 사업준공 예정(공사완료 공고)

- 미준공 사유 : 기반시설(한옥, 중심상업지 하천, 물푸레골 등) 공사 미이행
및 수차례 개발계획변경 추진

※ 타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기간 예시

- 상계장암지구(267,455m²) : 개발계획승인('04.09) ~ 사업준공('15.12예정)

- 천왕지구(484,992m²) : 개발계획승인('04.11) ~ 사업준공(15.12예정)

※ 참고 : 토지이용계획도

- 하나고등학교(면적 26,447.6㎡), 은평3-2지구에 위치



나. 은평지구 토지등기 절차

1)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목 적

이 예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

요 건

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나.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한다.

등기신청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된 후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때에 당해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2)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첨부서면

- 종전 토지에 대한 폐쇄 토지대장등본
-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지번별조서
-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2) 향후 추진계획

사업준공이전 단계 - 지적확정측량 준공

- 지적확정측량 준공 후 준공도면(지적확정측량 성과도) 작성

사업준공이후('16.12월 예정) 단계

- SH공사
 - 은평지구 사업준공 공고(2016.12월 예정) 후 은평구청에 사업완료 신고
 - 은평구청
 - 지적공부 정리 공고(공고기간 14일)
 - 종전 토지대장 폐쇄 및 확정 토지대장 생성(통상 7~14일)
- ※ 총 소요기간 21일 ~ 27일

- 지적공부 정리 완료 통보 (은평구청 → SH공사)
- SH공사
 - 지적공부 정리 완료 통보 받은후 등기소에 말소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보존등기 완료 후 기존 수분양자의 매매계약시 면적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내(통상 2개월 소요)

다. 하나고등학교 부지 매각 추진현황

1) 부지현황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원
- 면 적 : 26,447.6㎡
- 도시계획 : 제2종 전용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 공급가격 : 65,061백만원

2) 추진경위

- '06.01.31 : 뉴타운 자립형사립고 설립 발표 (서울시)
- '06.06.26 : 자사고 설립운영 학교법인 모집공고 (서울시)
- '06.09.08 : 학교법인 우선협상자 선정 (서울시)
- '07.05.22 : 자립형사립고부지 공급가격 요청 (서울시)
- '07.06.05 : 자립형사립고부지 감정평가 실시 (SH공사)
- '07.12.21 : 매매계약체결 요청(서울시)
- '07.12.27 : 매매계약 체결 (서울시 ↔ SH공사)
- '08.12.01 : 잔금 납부 (서울시 → SH공사)

3) 공급방법

- 가격 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산술평균

○ 계약 방법 : 서울시와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0%, 잔금 90%)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4항(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매매계약서상 토지소유권 이전 조항

○ 매매계약서 제13조(소유권 이전)

- 택지개발사업 준공(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후 소유권 이전

① "갑"(SH공사, 매도자)은 "을"(서울시, 매수자)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매매대금을 전액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에 "을"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개발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준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이전은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행하기로 한다

○ 매매계약서 제9조(면적기준 및 정산)

- 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의거 정산

① 목적용지의 면적은 지구실시계획승인에 의한 개발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개발사업 준공후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증감분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라. 장학금 기탁 현황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관련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추진경위

- 2003년 상암지구 분양시 분양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대시민 약속
- 2004년 ~ 2011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800억원 기탁
- 2012년 공사의 채무 과다에 대한 우려로 시의회의 기탁 중단 촉구에 따라 기탁금 60억원으로 축소 후 기탁 중지
- 총 860억원 기탁(2004~2012년)

2) 기탁절차 및 현황

기탁절차

- 예산(안)편성 → 이사회 부의.의결 → 서울시 기탁
※ 공사는 법률적 근거하에 서울시에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

연도별 기탁현황

연도별	기탁금액	기탁기관	용도	재원	방법
계	860억원	-	-	-	
'04~'06	300억원	서울시	불우 고등학생	상암지구 분양수익	분기별 25억원
'07~'11	500억원	서울시	불우 고등학생	사업수익	
'12	60억원	서울시	불우 고등학생	사업수익	분기별 15억원
'13 ~	-	-	-	-	편성제외

3. 서울장학재단

가. 장학재단 현황

설립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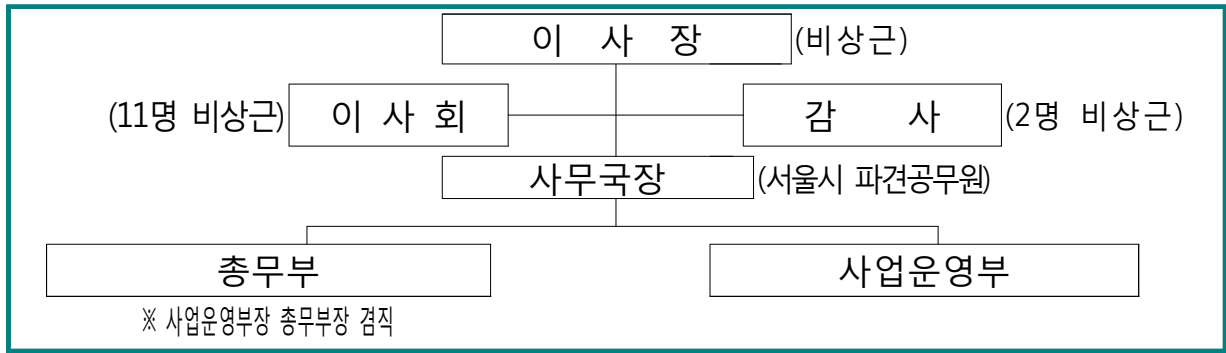
- 기관명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일 : 2009. 1. 8.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304(운니동,가든타워)

추진경위

- '08. 5.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 '08.12. 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시교육청)
- '08.12.24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 '09. 1. 8/1.13 재단설립등기(상업등기소) 및 사업자 등록(남대문세무서)
- '10. 3. 1 재단 독립운영 개시
- '12. 3. 7 2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 '14.7.1/'15.3.11 3대,4대 문미란 이사장 취임

조직

- 사무국 : 이사장(비상임), 이사회, 감사, 사무국(2부)



○ 인 력 (2015.7. 현재)

계	사무국장 (시 파견)	사업운영, 총무부 겸직(부장)	사업담당	회계담당	홍보, 정보화 담당
6	1	1	2	1	1

예산현황(서울시 출연금)

◎ 기본재산 : 135억원('15.6월 현재)

◎ 2015년 예산내역

○ 수 입 : 10,128,515천원(서울시 출연금)

○ 지 출 : 10,128,515천원

(단위 : 천원)

계	일반 운영비 (사무비)	장학사업비					
		소계	고교 분야	자사고 분야	대학 분야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선발 경비 정보화 등
10,128,515	476,951	9,651,564	5,100,000	144,000	4,000,000	310,000	97,564

※ 일반(경상) 운영비 : 인건비 229,125천원 / 사무관리비 227,375천원/예비비 20,451천원

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서울 미래세대 배움의 꿈을 키우는 재단

추진전략

- 장학금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장학사업의 전문성을 통한 서울의 핵심인재 양성
- 시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기반 마련



전략과제

공평한 교육출발선 학비장학금 지원	문화예술 재능을 키우는 재능장학금	시민·기업 재단이 함께 만드는 장학금	Story가있는 인재성장 프로그램 운영
-----------------------------	-----------------------------	-------------------------------	--------------------------------

사업추진 방향

1.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
2. 사업의 전문성·지속성·확장성을 통한 서울의 인재성장 기반마련
3. 시민·기업·재단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

다. 정책과제 분석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장학금 다변화 필요
- 국가장학금(대학),저소득층학비지원(고교)의 확대에 따라 전통적 장학사

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서울형 인재육성 장학금 (가치, 재능, 꿈지원)
- 학비배분 중심 → 인재성장 중심
- 공익인재, 재능장학금, 글로벌장학금등을 통한 장학생의 재능과 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추진

유전유학(有錢有學)무전무학(無錢無學)의 시대

○ 교육비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한됨

-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 등록금 지원외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함
- 멘토링, 장학생 커뮤니티 활성화등을 통해 장학생의 사회적 지원체계 조성

저금리로 인한 민간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위축

○ 민간재단의 재정악화로 인한 장학금 축소

- 민간재단의 장학사업 축소에 따라 저소득 학생의 장학금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대 필요

라.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공평한 교육의 출발선 학비 장학금 지원

가)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목적

- 고등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와 자치구의 추천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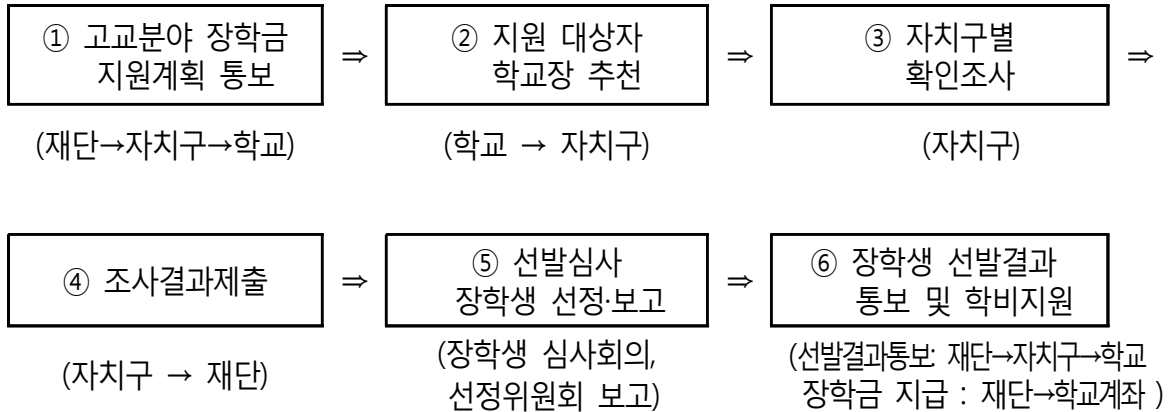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100백만원 (출연금 50억, 민간기탁금 10억원)

- 선발인원 : 330개 고등학교 3,250명 (연인원 13,000명)
- 선발대상 : 차상위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 (최저생계비 170%)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지원

서울다솜학교(다문화가정대안학교) 입학금, 수업료등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330개 고교 장학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및 자치구 간담회(5월)
- 장학생 선발지원(다솜학교포함): 5,703명(연인원) 2,344백만원 (6월)

○ 향후계획

- 25개 자치구 장학담당자 및 교육청 간담회 추진 (9월)
- 3/4분기 고교분야 장학생 선발 및 지원 (10월)

나) 하나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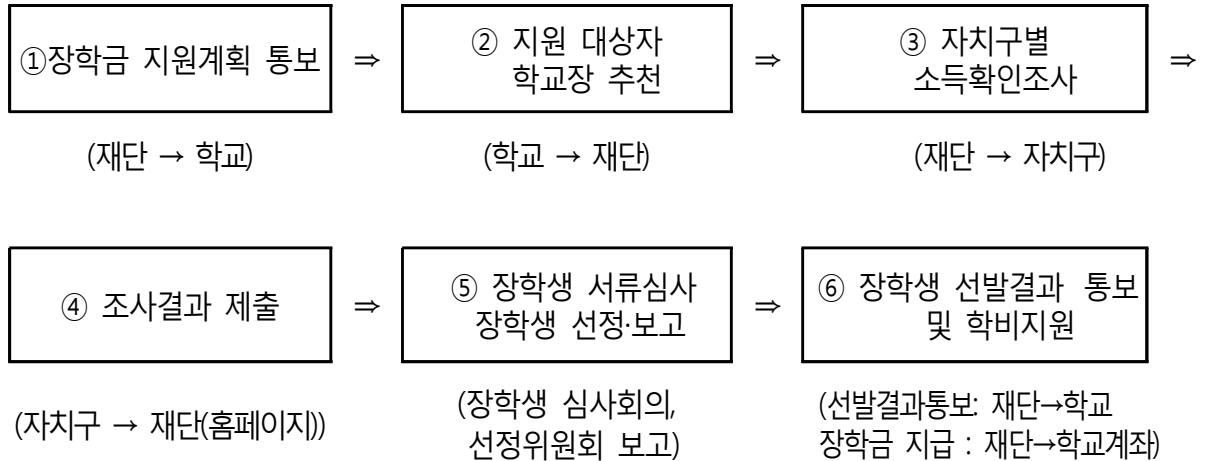
- 하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44백만원

- 선발인원 : 90명
- 선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지원(일반 고등학교 등록금 범위)
개인별 연간 1,600,000원 장학금 지급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서류심사 진행 (5월)
- 장학생 선발지원, 90명 72백만원 (6월)

○ 향후계획

- 3/4분기 장학금 지원, 90명 36백만원 (9월)

다)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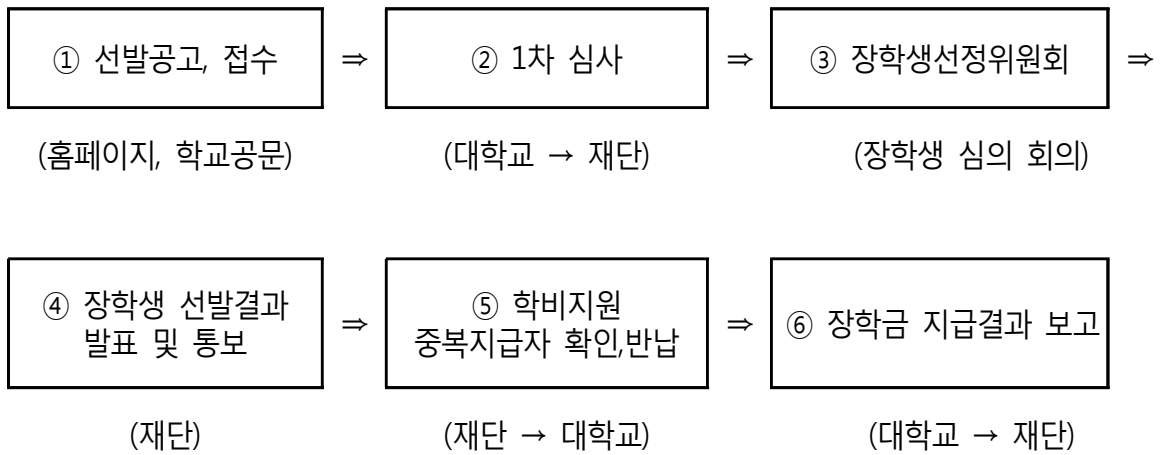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3,700백만원

- 선발인원: 3,700명
- 선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연2회 선발)
-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1,000,000원 장학금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52개 대학 장학담당자 간담회 추진 (4월)
 - 상반기 장학생 1,850명 선발 장학금 1,850백만원 지원 (5월)
- 향후계획
 - 하반기 장학생 1,850명 선발 (10월)
 - 장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2) 문화·예술·체육·공익을 위한 재능장학금 지원

가) 문화·예술·체육 재능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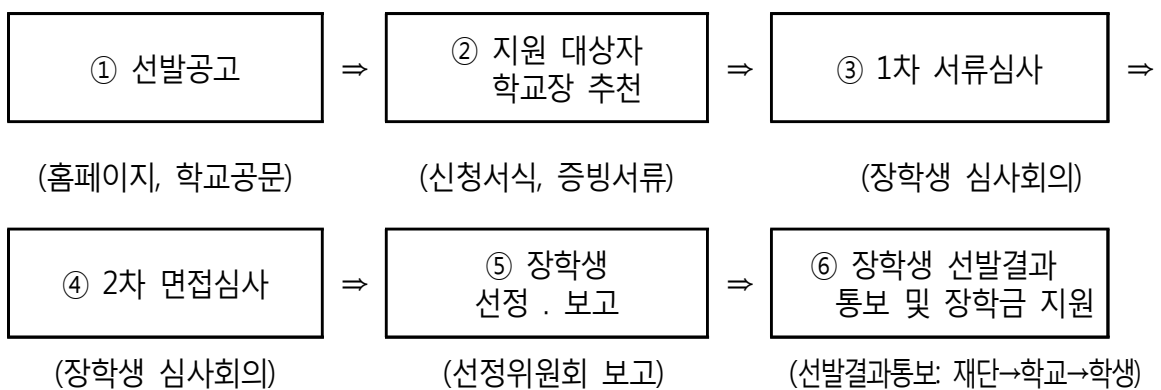
사업목적

-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우수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 310백만원
- 선발인원 : 100명 (음악, 미술, 체육, 무용분야)
- 선발대상 :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
최저생계비 170%이내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연 3,000,000원의 재능 개발비용, 실기연습비용, 대회참가비 등 지원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재능 장학생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추진 (5월)
- 재능 장학생 100명 선발, 장학금 150백만원 지급 (6월)

○ 향후계획

- 장학생을 위한 멘토링: 출연기관 및 대학등 전문기관과 연계 (10월~11월)
서울시향, 서울시디자인재단, 한국체육대학등과 멘토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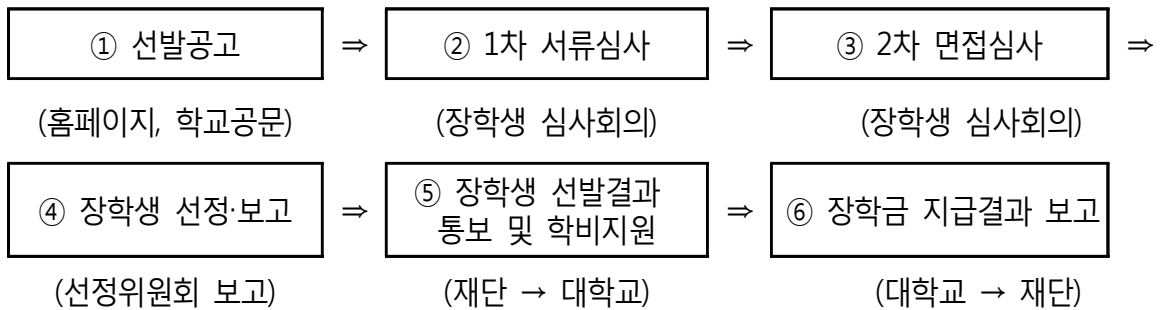
나) 착한 재능 공익인재 장학금

사업목적

- 사회를 위한 공익적 가치기반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수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 300백만원
- 선발인원 : 50명
- 선발대상 : 사회복지, 사회창의, 공익이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경험이 우수한 학생
- 지원내용 : 연 6,000,000원 장학금 (등록금, 공익활동장려금), 공익프로젝트, 장학생 커뮤니티, 장학생봉사활동 등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장학생 50명 선발 79백만원 지원,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2월)
 - 8개 공익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운영 (5월~11월)
- 향후계획
 - 공익프로젝트 중간점검 및 봉사활동 (10월)
 - 공익프로젝트 사례 발표회 및 장학생 간담회 (12월)

3) 시민·기업·재단이 함께 만드는 장학금 지원

가) 한국엠플손글로벌리더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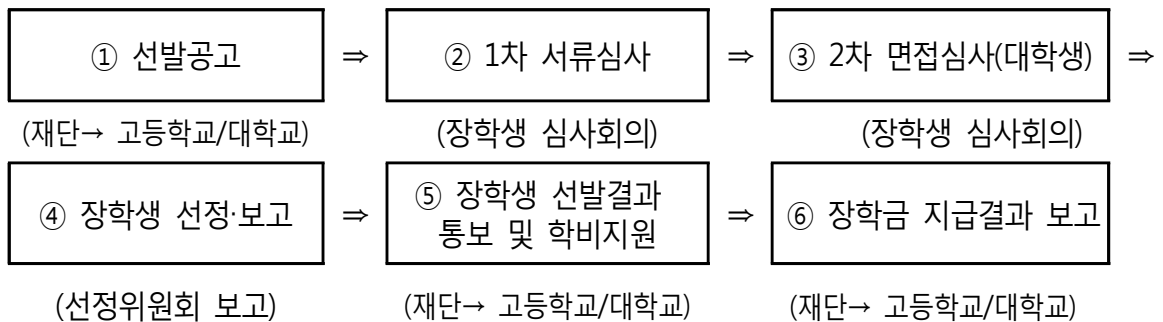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 기여와 해외교환학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성을 키우고, 글로벌인재로 지원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 400백만원
- 선발인원 : 110명 (고교생 50명, 대학생 60명)
- 선발대상 :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한 고교생 (최저생계비200%)
 해외교환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최저생계비200%)
- 지원내용 :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 학업장려 장학금
 장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활동발표회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장학생 110명 선발, 200백만원 지원, 장학증서 수여식 (7월)

○ 향후계획

- 장학생 커뮤니티운영, 장학생 봉사활동 (8월~11월)
- 교환학생 사례 공유회 및 2차 장학금 지급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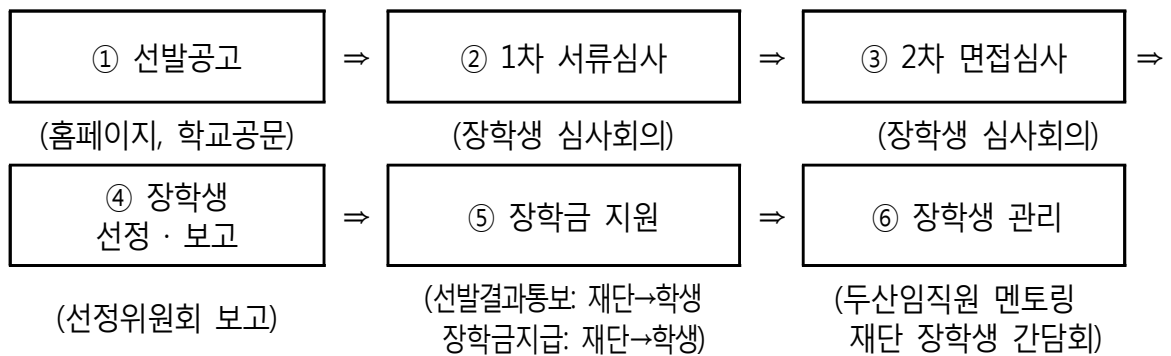
나) 청춘스타트 장학금

사업목적

- 대학신입생들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소득가정 및 복지시설 거주 대학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선발인원 : 30명 (신입생 15명, 기존장학생 10명)
- 선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대학신입생
복지시설 거주 신입 대학생
- 지원내용 : 신입생 6,000,000원 기존학생 1,500,000원 장학금(연간)
장학생 봉사활동, 커뮤니티활동, 멘토링 활동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한 장학생 15명 선발, 45백만원 지원(2월)
- 향후계획
 - 임직원 복멘토링·문화활동, 장학생커뮤니티, 봉사활동 (8월~11월)

다) H-점프스쿨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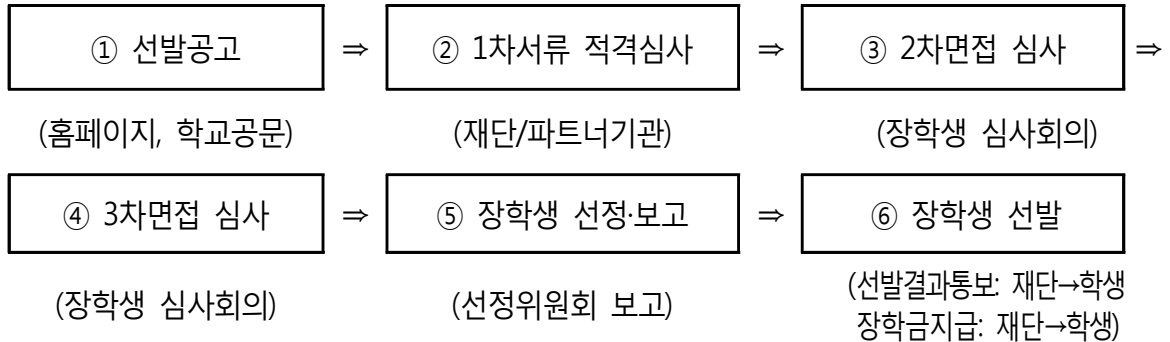
사업목적

-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는 교육봉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멘토링을 통해 우수한 창의인재로 양성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48백만원
- 선발인원 : 100명

- 선발대상 : 주8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대학생
- 지원내용 : 장학금 연간2,500,000원, 장학생 교육, 커뮤니티지원
인문학특강, 현대자동차 임직원 멘토링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기존장학생 (2014년) 교육봉사활동 수료식 (6월)
- 향후계획
 - 3기장학생 100명 선발 및 장학금 125백만원 지원(9월)
 - 교육봉사활동, 진로멘토링, 인문학특강 추진(9월~)

라)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

사업목적

-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들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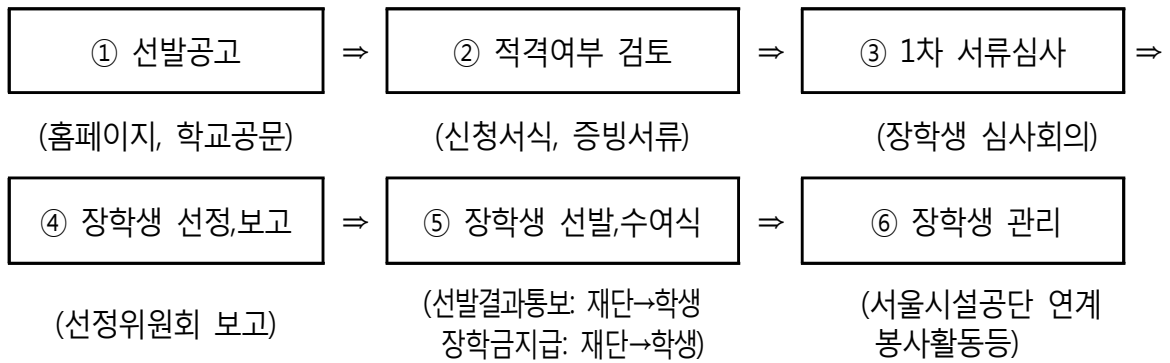
- 지원규모 : 60백만원 (청계천 행운의 동전모금을 통한 기금)
- 선발인원 : 30명
- 선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특성화 고등학생

학업의지가 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 지원내용 : 장학금 연간 2,000,000원

서울시설관리공단 투어, 자원봉사활동

○ 선발절차



○ 추진현황

- 장학생30명 선발, 장학증서 수여식, 30백만원 지원 (4월)

○ 향후계획

- 서울시설공단 사업장 투어, 장학생 간담회 진행 (10월~11월)

마) 유명아 학업장학금

사업목적

○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아닌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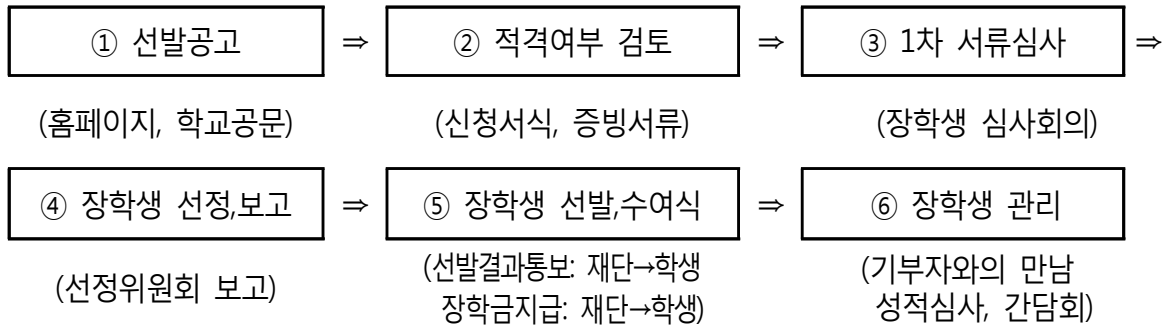
○ 선발인원 : 12명

○ 선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대학생
학업의지가 강하여 성적향상이 우수한 대학생

○ 지원내용 : 장학금 연간 4,000,000원

기부자와의 만남, 장학생 간담회, 장학생 선물지원

○ 선발절차



○ 향후계획

- 장학생 공고 및 서류심사, 2차 면접, 장학생 12명 선발 (10월)
- 장학증서 수여식, 기부자와의 만남, 장학생 간담회 진행 (11월)

바) 우리아이희망장학금외 기타 장학사업

○ 위기가정 든든한 친구 「우리아이희망장학금」

보호자의 실직, 질병, 사망등 갑작스런 가정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사각지대 가정을 위한 장학금

- 중고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장학금 지급

○ 미래의 글로벌인재 「글로벌리더장학금」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경험을 하고, 세계시민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로 양성 함

- 아시아, 유럽, 미주등 250만원~300만원 장학금

○ 폐휴대폰 장학금 「푸른꿈 장학금」

○ 중소기업 여성CEO 「씨티코스비 여성CEO장학금」

○ 공익가치장학금 「소나무 장학금」

○ 오토 꿈이룸 장학금((주)오토(OTO)기탁)

- 장학금: 30,000천원
- 내용: 저소득가정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취득지원 30명

4) 스토리가 있는 인재 성장 프로그램 운영

가) 장학생을 위한 인재성장 프로그램

- 멘토링을 통한 장학생 희망네트워크 구축
 - 기업 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 현대자동차, (주)두산 임직원 멘토 연계
 - 재능과 진로를 위한 멘토링
 - 서울시출연기관 연계 (서울시향,디자인재단등)
 - 대학의 문화·예술·체육분야와 연계
 - 장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연(h-점프스쿨)

- 장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 장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장학생One-Day봉사활동 및 정책박람회등
 - 장학생 프로젝트 운영(공익프로젝트)
 - 장학생 간담회,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나) 스토리를 통한 장학사업 홍보

- 장학생의 희망 스토리, e-뉴스레터 발송
 - 재단 홈페이지, SNS를 통한 성공사례 전파
 - 장학생 성공수기, 재단행사, 모범사례 전파
 - 글로벌 체험, 장학생 커뮤니티 소개
 - 대학생 기자단 운영

- 장학생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 개발
- 장학생 공익활동, 교육봉사활동 홍보
- 공익인재 공익프로젝트, h-점프스쿨 교육봉사

마. 하나고 장학사업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 서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 서울특별시와 학교법인 상호 협약체결('09.1.23일)
 - . 서울특별시와 학교법인에서 전체 학생 정원 중 각각 15%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상호 협약 (임대차 계약 제5조)

〈임대차계약서〉

- 제5조(학교법인 운영 및 학교설립계획 관련 이행사항)
 - ① "하나학원"은 학교법인 및 자사고 설립.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원의 15%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학생정원 15%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2.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은 8:2이상으로 한다.
 3. 학생 모집은 서울시단위로 하고,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지원규모(연도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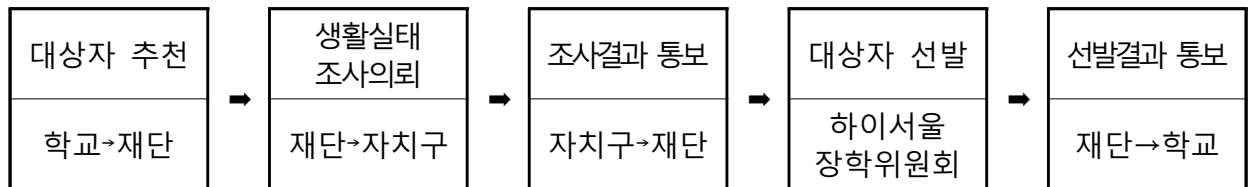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원예산(천원)	162,000	324,000	486,000	486,000	324,000	144,000

○ 지원시기: 분기별

○ 선발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소지에서 실거주하는 하나고 재학생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자녀(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차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
 -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선발절차



○ 연도별 장학금 지급 실적

연도	인원	금액(천원)
2015(2분기 현재)	90	72,000
2014	81	324,000
2013	90	486,000
2012	90	483,300
2011	60	324,000
2010	30	162,000
합계	441	1,851,300

3) 장학생 선발현황

2010년

○ 추천기간 : 2.17 ~ 2.23

○ 지원규모 : 162,000천원

○ 추천인원 : 1학년 33명(2010년 개교)

○ 자치구 소득실태조사

- 조사기간 : 2.24 ~ 3.10

- 조사결과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기타저소득
33	8	7	18

○ 장학위원회

- 1차 위원회

. 개최일 : 3.25(목)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위원	김창동	양정고등학교장
위원	박순만	언남고등학교장
위원	김종관	성동공업고등학교장
위원(당연직)	이창학	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

. 의결사항

- 총 신청자 33명 중 우선선발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5명을 우선선발하고, 추가인원은 장학금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차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 우선선발 현황

총 선발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	8	7

- 2차 위원회

. 개최일 : 4.12(월)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위원	김창동	양정고등학교장
위원	박순만	연남고등학교장
위원	김종관	성동공업고등학교장
위원	유성남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장
위원(당연직)	이창학	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

· 의결사항

-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가계곤란자 15명 추가 선발 확정(학생 정원의 15%, 총 30명)
- 최종 선발 현황

총 선발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
30	8	7	15

○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현황(명/천원)

선발유형	인원 (30)	지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수급자	8	12,400	12,400	12,400	12,400	49,600
차상위	7	10,850	10,850	10,850	10,850	43,400
기타저소득	15	17,250	17,250	17,250	17,250	69,000
합계						162,000

2011년

- 추천기간 : 2.24 ~ 2.28
- 지원규모 : 324,000천원
- 추천인원 : 총64명(1학년 30명, 2학년 34명)

○ 소득실태조사

- 조사기간 : 3.1 ~ 3.15
- 조사결과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64	10	8	24	1	21

○ 장학위원회

- 개최일 : 4.14(목)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강선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위원	김창동	양정고등학교장
위원	김병란	방산고등학교장
위원	윤경식	휘경공업고등학교장
위원	정명연	서울방송고등학교장
위원	황혜주	혜화여자고등학교장

- 의결사항

- . 총 신청자 64명 중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총 6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 . 선발 현황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60	10	8	24	1	17

○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현황(명/천원)

선발유형	인원 (60)	지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수급자	10	13,500	13,500	13,500	13,500	54,000
한부모보호	8	10,800	10,800	10,800	10,800	43,200
차상위(120%)	24	32,400	32,400	32,400	32,400	129,600
차차상위(150%)	1	1,350	1,350	1,350	1,350	5,400

기타저소득	17	22,950	22,950	22,950	22,950	91,800
합계						324,000

□ 2012년

- 추천기간 : 2.7 ~ 2.10
- 지원규모 : 486,000천원
- 추천인원 : 총101명(1학년 27명, 2학년 35명, 3학년 39명)
- 소득실태조사
 - 조사기간 : 2.11 ~ 3.7
 - 조사결과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101	11	15	33	9	33

○ 장학위원회

- 개최일 : 4.30(월)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강선보	고려대학교 부총장
위원	김창동	양정고등학교장
위원	김성기	금천고등학교장
위원	안대운	용산공업고등학교장
위원	황혜주	혜화여자고등학교장
위원	정명연	서울방송고등학교장
위원	안명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의결사항

- . 총 신청자 101명 중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총 9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 . 선발 현황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90	11	15	33	9	22

○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현황(명/천원)

선발유형	인원 (90)	지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수급자	11	14,850	14,850	14,850	14,850	59,400
한부모보호	15	20,250	20,250	20,250	20,250	81,000
차상위(120%)	33	44,550	44,550	43,200	43,200	175,500
차차상위(150%)	9	12,150	12,150	12,150	12,150	48,600
기타저소득	22	29,700	29,700	29,700	29,700	118,800
합계						483,300

※ 3분기 : 차상위 1명 일반고 전출로 지급 중단

□ 2013년

- 추천기간 : 1.9 ~ 1.31
- 지원규모 : 486,000천원
- 추천인원 : 총96명(1학년 32명, 2학년 25명, 3학년 33명)
- 소득실태조사
 - 조사기간 : 2.1 ~ 3.8
 - 조사결과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96	9	13	52	3	19

○ 장학위원회

- 개최일 : 4.30(화)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강선보	고려대학교 부총장
위원	김창동	양정고등학교장
위원	한명복	신현고등학교장
위원	황혜주	혜화여자고등학교장
위원	정명연	서울방송고등학교장
위원	변태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의결사항

- . 총 신청자 96명 중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총 9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 . 선발 현황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90	9	13	52	3	13

○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현황(명/천원)

선발유형	인원 (90)	지급액(1인당)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수급자	9	12,150	12,150	12,150	12,150	48,600
한부모보호	13	17,550	17,550	17,550	17,550	70,200
차상위(120%)	52	70,200	70,200	70,200	70,200	280,800
차차상위(150%)	3	4,050	4,050	4,050	4,050	16,200
기타저소득	13	17,550	17,550	17,550	17,550	70,200
합계						486,000

2014년

- 추천기간 : 4.25 ~ 5.9
- 지원규모 : 324,000천원
- 추천인원 : 총92명(1학년 40명, 2학년 27명, 3학년 25명)
- 소득실태조사
 - 조사기간 : 5.12 ~ 5.16
 - 조사결과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결격자
92	8	21	34	6	21	2

※ 결격사유 : 서울시외 거주자

○ 장학위원회

- 개최일 : 5.20(화)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수
위원	김창동	양정고등학교장
위원	한명복	신현고등학교장
위원	정명연	한강미디어고등학교장
위원	김홍식	강서공업고등학교장
위원	안명수	세현고등학교장

- 의결사항

- . 총 신청자 92명 중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총 8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 . 선발 현황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81	8	21	34	6	12

○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현황(명/천원)

선발유형	인원 (81)	지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수급자	8	8,000	8,000	8,000	8,000	32,000
한부모보호	21	21,000	21,000	21,000	21,000	84,000
차상위(120%)	34	34,000	34,000	34,000	34,000	136,000
차차상위(150%)	6	6,000	6,000	6,000	6,000	24,000
기타저소득	12	12,000	12,000	12,000	12,000	48,000
합계						324,000

□ 2015년(2분기 현재)

- 추천기간 : 3.11 ~ 3.31
- 지원규모 : 144,000천원
- 추천인원 : 총101명(1학년 40명, 2학년 37명, 3학년 24명)
- 소득실태조사
 - 조사기간 : 4.1 ~ 4.22
 - 조사결과

총인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결격자
101	11	20	37	3	29	1

※ 결격사유 : 서울시외 거주자

○ 장학생 서류심사

- 개최일 : 4.27(월)
- 심사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심사위원	한명복	신현고등학교장
심사위원	김홍식	서울산업정보학교장
심사위원	이미경	서울여대 교수

- 심사결과 : 총 신청자 101명 중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총 9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 재단의 장학생 선정위원회 안건의결을 통한 최종 선발
- 개최일 : 5.8(목)
- 참석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김무봉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위원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위원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위원	김창동	상문고등학교장
위원	박경전	오금고등학교장

- 개최결과 : 서류심사 원안 통과(90명 선발)
- 선발현황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저소득
90	11	20	37	3	19

○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현황(명/천원)

선발유형	인원 (90)	지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수급자	11	4,400	4,400	지급예정		8,800
한부모보호	20	8,000	8,000			16,000
차상위(120%)	37	14,800	14,800			29,600
차차상위(150%)	3	1,200	1,200			2,400
기타저소득	19	7,600	7,600			15,200
합계					72,000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가. 일반 현황

법인현황

법인명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현황		기본재산(천원)		경영학교	비고
			이사	감사	교육용재산	수익용재산		
하나학원	2008.10.31	김승유	9명	2명	29,672,060	23,412,572	하나고	

학교현황

학교명	위 치	설립일	학급수	학생정원 (급당인원)	부지면적	교사면적	비고
하나고 (자사고)	은평구 진관동 129 일대	2010.3.1	24학급	600명 (25명)	26,447.6㎡	28,577㎡	

나. 하나고 설립 및 자사고 지정

설립배경

-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학교의 설립 필요성 및 정부의 자사고 정책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및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입주민과의 약속 등 반영
(서울시의 우수고등학교 유치 및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설립(지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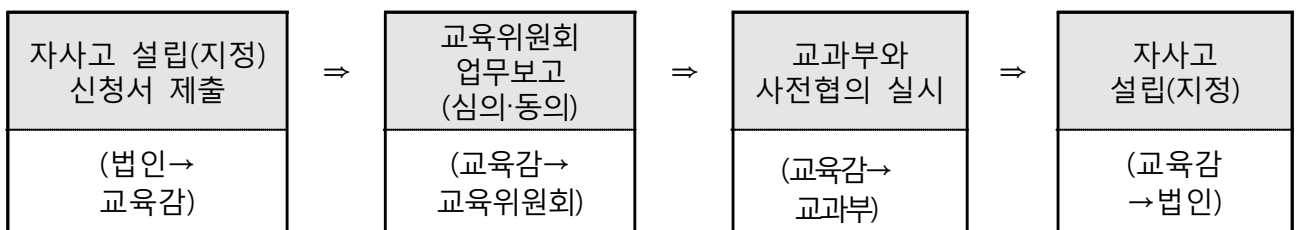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고등학교 인가기준 등)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 교과부(교육부)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지침

□ 주요 추진경과

- 2006. 1. 1. : 서울시장 자립형사립고 2~3개교 설립 발표(은평, 길음 등)
- 2008. 2.18. : 은평구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제공모 (서울시)
 - ※ 200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대교는 중도 포기
- 2008. 4.30. : 우선협상대상자 유치 선정[(주)하나금융지주] (서울시)
- 2008.10.31. : 학교법인 **하나학원 설립 인가**
- 2008.11.10. :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 신청서 제출
(학교법인 하나학원 → 교육청)
- 2008.12.22. : 교육위원회 하나고(자사고) 설립계획 동의안 심의-**원안가결**
- 2008.12.31. :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 인가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 2009. 8.21. :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가
- 2010. 3. 1. : 하나고등학교 설립(개교)
- 2010. 6.30. : 하나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전환**
 - ※ 2010.6.2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제76조의2 신설)에 따라 고등학교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구분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 설립(지정) 절차



□ 자립형 사립고 지정 주요내용 (2008.12.31.)

- 관련 근거 :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지침(교과부)
- 주요내용

구 분	지 침 내 용	지 정 조 건
학생선발	○ 모집지역 학교별 선택에 따라 전국대상 선발, 지역단위 선발 또는 전국·지역단위 병행선발 가능	○ 모집지역 서울시(단,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군인 및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전국단위 모집)
	○ 선발방법 -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 학생의 소질·적성·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특성화 적극 권장	○ 선발방법 - 일반전형 : 60%(내신+심층면접) - 특별전형 : 40%(면접 등 자체기준) ·임직원 자녀 20% ·사회적배려자 20% ※ 교과부 협의 결과 - 사회적배려자 자녀의 입학기회 부여를 위하여 선발비율 상향 조정(신청 10% → 조정 20%)
장 학 금	▶ 학생 1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의무화	▶ 학생정원의 15% 이상 (서울시 지원금 별도)
학생납입금	▶ 당해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00%이내 책정	▶ 일반고의 3배 이내 책정
법인전입금	▶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8:2(20%) 이상 부담 ※ 자립형 사립고 지정시 재정결함 보조 제외	▶ 학생납입금의 20% 이상

※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정원 대비 20% 특별전형으로 할애한 사유

- 서울시 공모에 의거 (주)하나금융이 설립대상자로 유치됨
- 자립형사립고 운영학교인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임직원자녀 중심으로 전형을 이루어 지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포항제철고(60%), 광양제철고(70%→현재 60%)

□ 하나금융그룹 하나고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계획	출 연 액 (재산가액)	출연시기	비고
학교설립비용	21,600,000	41,950,000	2008~2010년	이행
수익용기본재산(현금)	3,000,000	3,000,000	2008~2010년	이행
수익용기본재산(주식)	-	22,100,000	2011년	추가출연

학교운영비	5,000,000 (법인운영비포함)	17,400,000	2010~2012년	이행
합 계		84,450,000		

※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위반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출연금 중단

※ 2013년도 이후 학교법인의 전출금

- 2013년 : 기 출연금을 처분하여 학교로 전출
- 2014년 : 전·현직 임직원의 기부금 및 기업 장학금으로 학교에 전출

학교용지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서울시-학교법인 간)

- 관련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5조) 및 시행령(25조)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기간	▶ 2009. 1.23. ~ 2059. 1.22. (50년간), 연장 가능
임대요율	▶ 임대료 기준액(651억원, 서울시 매입가)의 0.5% ※ 2차년도부터 전년도 기준액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최고 3%) 곱하여 산정
부대 합의조건	▶ 장학금 : 학생정원의 15% 이상 (서울시 15%의 지원 별도) ▶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 : 학생납입금 ⇒ 8 : 2 ▶ 학생모집 : 서울(강남·서초·송파구 20% 초과하지 않을 것) ▶ 기타 :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 제출

다. 하나고 학생모집 등 운영 현황

신입생 모집(선발)

- 최근 3년간 입학 현황

연도별	일반전형	특별전형		비고
		임직원자녀	사배자 등	
2013학년도	120	40	44	
2014학년도	120	40	50	
2015학년도	120	40	45	

○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의 정원 20% 특별전형

- 기존 학교인 포항제철고(정원의 60%), 광양제철고(정원의 60%)에서도 임직원 자녀 대상 학생 선발 선례가 있음

※ 하나금융에서 학교설립을 위해 300억원을 출연,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서 연평균 25억원 정도를 하나고에 전출

- 하나고 입학전형 방법 등은 설립인가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결
과 교과부(교육부)의 사전 협의 거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

- 하나금융그룹사의 근무기간을 통산(通算)하여 2년 이상인 임직원의 자녀
를 대상으로 함

□ 장학금 지급 등 재정운영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지급 인원			지급액		
	정원	학생수	지급비율	하나고	서울시	총액
2012학년도	600	157	26%	530,489	483,300	1,013,789
2013학년도	600	140	23%	567,943	486,600	1,054,543
2014학년도	600	145	24%	486,854	324,000	810,854

※ 하나고 지원 장학금 학생 정원의 15% 이상으로 충족

○ 최근 3년간 학생납입금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일반고			하나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2013학년도	14,100	1,450,800	344,440	42,300	4,352,400	1,008,000
2014학년도	14,100	1,450,800	351,360	42,300원	4,352,400	1,008,000
2015학년도	14,100	1,450,800	353,220	42,300원	4,352,400	1,512,000

○ 법인전입금 전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정)
전입액	2,165,255	2,212,054	3,016,408	2,892,454	2,295,682	2,478,411

※ 학생 납입금의 20% 이상으로 충족

□ 교원(기간제교사) 운영

○ 2015학년도 학급수 및 일반교원 정원배정 기준을 비교

학교명	학급수	정원배정 기준율	일반교사 (정원)	일반교사 (현원)	기간제 교사	총 정원 (교장.감 포함)	비고
일반 사립고	24급	1.941	47명	38명	9명 (19.0%)	49명	사립 일반고평균
하나고	24급	1.941	47명	34명	13명 (26.5%)	49명	

○ 3개년 하나고 정규교사 임용현황

연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화학	생물	음악	체육	중국어	합계	비고 (비율)
2013	1		1					1	1	3	(6.4%)
2014		1			1		1			3	(6.4%)
2015		2	1	1		1				5	(10.6%)

○ 3개년 하나고 기간제교사 임용현황

연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물리	화학	생물	체육	미술	일본어	합계	비고 (비율)
2013		3	1	1			3	1			1	10	(20.4%)
2014	1	4	2	2		2	1	3		1	1	17	(34.7%)
2015	1	2	1	1	1	1	2	2	1	1		13	(26.5%)

- 하나고의 정규교사 임용은 일반교사 대비 연간 평균 8.5% 채용하고, 기간제교사 임용은 연간 평균 27.2% 채용함(3개년 연간 평균치)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로 학생맞춤형교육과정(교과교실제, 학기별 집중이수제 운영) 등으로 학기별로 필요한 교과별 교원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기간제교사의 채용인원이 일반사립고보다 높음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전형 실시

라. 기타자료

1) 하나고 설립(지정) 경과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	- (주)하나금융지주 → 교육청 - 2008.09.30.
학교법인 설립인가	- 교육청 → (주)하나금융지주 - 2008.10.31.
↓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자립형사립고 지정 신청	- 학교법인 하나학원 → 교육청 - 2008.11.10.
↓	
자율학교 관련 협의	- 학교법인 하나학원 → 교육청 - 2008.12.02.
↓	
교육위원회 설립(지정) 계획 동의안 제출	- 교육청 →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 2008.12.10.
↓	
하나고 학교설립(지정) 계획 동의안 의결	- 서울시의회(*원안가결) → 교육청 - 2008.12.22.
↓	
하나고 설립계획(안) 교육위원회 의결내용 제출	- 교육청 → 교과부(교육부) - 2008.12.23.
↓	
하나고 설립(지정) 계획안 사전협의안 통보	- 교과부(교육부) → 교육청 - 2008.12.29. - 하나고 설립(지정) 계획안 동의
↓	
하나고 설립(지정) 계획 인가 통보	- 교육청 → 학교법인 하나학원 - 2008.12.31.

	- 하나고 설립 계획 인가 및 자사고 지정
↓	
하나고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 보고	- 학교법인 하나학원 → 교육청 - 2009.02.03. - 계약일 : 2009.1.23.(~ 2059.1.22. 50년간)
↓	
하나고 설립인가 신청	- 학교법인 하나학원 → 교육청 - 2009.08.12.
하나고 설립인가	- 교육청 → 학교법인 하나학원 - 2009.08.21.
↓	
개교	2010. 3월
↓	
하나고 자립형사립고 →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	- 학교법인 하나학원 → 교육청 - 2010.06.30.
하나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사전 협의	- 교육청 → 교과부(교육부) - 2010.06.30.
하나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사전협의(안) 동의	- 교과부(교육부) → 교육청 - 2010.06.30. *하나고 지정(안) 동의
하나고 자율형사립고 전환 지정	- 교육청 → 학교법인 하나학원 - 2010.06.30.

2) 하나고 자립(울)형 사립고 지정 관련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개정 사항

시행일	조항 내용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 2. 17 [대통령령 제18282호]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375호, 2009.3.27.>

제105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2010. 6. 29 개정 후 제91조의 3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 칙

제3조(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율형 사립고 전환 관련 질의회신 결과(교과부, 2010.6.3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75호 부칙 제3조 해석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 조치를 둔 의미는

- 자립형 사립학교로 시범 운영하였던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경우 제91조의3제2항에 의한 신청서 제출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
- 이므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3) 하나학원 재산 및 하나금융그룹 출연 현황

□ 학교법인 하나학원 재산 현황(2014.12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재산구분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구분	면적	재산가액	구분	수량	재산가액
현 금	토 지	-		현 금	4계좌	2,300,000
유가증권	건 물	28,577m ²	29,672,060	유가증권	503,880주	21,112,572
합 계	계	-	29,672,060	계		23,412,572

※ 【참고】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대비 보유액

(단위 : 천원)

기준액(A)	보유액(B)	과부족(B-A)	비 고
1,638,993	23,412,572	21,773,579	

□ 하나금융그룹 출연 현황(하나금융그룹→학교법인)

(단위 : 천원)

연도	출연대상	사용목적	출연금	비고
2008	하나은행	학교설립비용	803,440	
	하나은행	수익용기본재산(현금)	1,500,000	
2009	하나은행	학교설립비용	34,605,586	
	하나은행	수익용기본재산(현금)	750,000	
2010	하나은행	학교설립비용	6,540,975	
	하나은행	수익용기본재산(현금)	750,000	
	하나은행	학교운영비 등	13,850,000	설립비 포함
2011	하나금융지주	수익용기본재산(주식)	22,100,000	

	하나대투증권	학교운영비	2,500,000	
2012	하나대투증권	학교운영비	150,000	
	하나은행	〃	900,000	
합 계			84,450,000	

※ 연도별 기준 일자 : 매년 1. 1 ~ 12.31

□ 법인전입금 전출 현황(하나학원→하나고)

(단위 : 천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금액	2,165,255	2,212,054	3,016,408	2,892,454	2,295,682	2,478,411 (예정)	15,060,264

※ 연도별 기준 일자 : 매학년도 당해연도 3. 1. ~ 익년도 2. 28.

4) 하나고 학교부지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결정된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하거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토지등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

가.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 '하나고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비리와 교원 채용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 ◆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의 학교폭력, 예산편성과 집행, 법인 이사회 운영 등 법인 및 소속 학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학비리 척결 및 학교 정상화에 기여

2) 감사기간 : 2015. 9. 14. ~ 2015. 10. 7.(기간 중 15일 실시감사)

3) 감사반 : 감사 3팀 사무관 이종현 외 총11명

4) 감사대상 : 학교법인 하나학원, 하나고등학교

나.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기관 경고등 (기관)	통보	고발 및 수사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반환	세입조치					
24	21	155,317	6 (15)	7 (155,317)	5 (89,360)	1 (64,320)	1 (1,635)	7 (19)	1 (13)	1 (3)	2 (2)	7 (21)

※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경고 처분함

※ 현지조치 사항 1건

※ (인원)은 건별 누적으로 인하여 중복 계산된 것임

주요 지적 및 처분 현황

-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수익자 부담경비 (기숙사비) 목적외사용 (시설충당 적립금 등),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생행정 개입 등 총 24건

- 파면 등 징계 :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등 7명
 - ※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5명), 교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2명), 국제영어캠프 회계업무 부당처리(3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2명), 수익자 부담경비 (기숙사비)목적 외 사용(1명), 비공개 (개인정보)자료 부당 공개(2명)
 - ☞ 총 15명인 사유 :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건별로 중복 징계 요구되어 누적된 인원 수임
 - ※ 임원승인취소(1명) : 향후 고발 결과 및 별도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 고발 및 수사 의뢰 : 신입학 및 전.편입학생 입학 전형자 성적 조작 의혹 등 7건(9명)
 - ※ 신입학 관련 성적 조작 의혹(7명), 교원 채용 업무 부당처리(3명), 국제 영어 캠프 회계업무 부당처리(4명), 법인회계 예산 목적외 부당 집행(1명), 교원 임면 허위 보고(2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1명), 부당 수익계약(3명)
 - ☞ 총 21명인 사유 : 이사장, 교장, 전)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건별로 중복 고발되어 누적된 인원 수임

- 재정상 조치 : 155,317,112원
 - ※ 회수 : 89,360,860원, 반환 : 64,320,370원, 세입조치 : 1,635,882원

2) 분야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신입학 및 전.편입 전형 성적 관리 부당 처리

1. 신입학 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2011학년도에는 지원자 28명에게 0.10점~1.70을,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 25명에게 0.10점~4.93점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모든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5점을 일괄 부여하였음
- 2013학년도의 경우,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21명에게 0.14점~12.20점을 부여하여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고, 2단계 심층면접전형에서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지원자 13명에게는 -4.25점~-0.02점을 부여하여 불합격시키고, 지원자 16명에게는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0.05점~2.45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로 선정하였음

2. 전·편입학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

-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시된 12회의 전·편입 전형 중 10회의 전·편입 전형 모집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전·편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하였음
- 2011년 3월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8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켰고, 2011년 8월 전·편입 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7명 중 1명에게만 전·편입학 전형소위원회에서 1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전·편입 전형을 실시하였음
- 성적조작 등의 정황에 근거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자치 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나,
-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012. 4월 경 교사에게 위 학교폭력사안을 보고 받고도 최초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한 같은 해 3월 이후로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였음

- 자치위원장의 업무방해로 판단되어 "고발"하였음

교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1.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 과정 부적정

- 2010~2014학년도까지 총 10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정교사로 전환하였으며, 기간제교사를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교사로 전환하였으면서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처럼 정교사 공개채용 인원에 포함하여 교육청에 허위 보고함

2. 신규교원 공개채용 업무 소홀

- 2010~2014학년도 신규교원 공개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채용인원을 '과목별 0명'이라고만 표기하여 정확한 채용 인원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공개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음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학교시설(기숙사포함)인력관리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그룹과의 거래를 통하여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학교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입찰 시 비용 증가가 예상 된다"는 사유로 ◇◇◇◇(주)과 계속하여 총 9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 외에도 기숙사세탁물처리용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학교 위탁급식, 주방기구 설치 계약 등 총 139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부당수의계약으로 학교예산에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 하였음

이사장의 부적절한 학사행정 개입

- 법인 이사장은 교직원의 지도.감독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속 교사가 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토록 지시하였고,
- 학교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교직원 입장에 대하여 신문광고 보도를 제안하고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는데도 ‘교직원 일동’으로 긴급하게 광고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학사행정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H국제영어캠프 회계업무 부당 처리

1.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2014년~2015년 방학 기간 중 ‘영어캠프 사무위탁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업체와 3회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영어캠프 예산 부당 집행

-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사무위탁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개발용역’을 체결(49,500천원)하고, ‘교육프로그램개발용역’ 내용에 포함된 ‘워크북 제작’은 별도로 발주(1,783천원) 하였으며, ‘사무위탁용역 계약’에 포함된 ‘영어캠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 또한 타 업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4,194천원)하는 등 3건의 중복계약을 통하여 총 55,477천원의 학교 예산에 손실을 입힘
- 영어캠프 사무위탁용역 업체인 △△△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미리

총 8,000천 원을 지급한 후 제출한 지출증빙자료(영수증 및 사용내역)를 확인한 결과, 이미 지출 완료된 영수증, 개인용으로 사용한 영수증 및 사용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는 등 총 4,115천원의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음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목적 외 사용

- 2013. 3. 13.에 서울시교육청에 기숙사 감가상각 총당금 적립 및 사용 계획과 2012학년도 적립금 88,278천원을 보고하였으나 적립 가능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반려하고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비로 적립한 감가상각 총당금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했어야 하는데도 감가상각 총당금 적립을 유지하였고, 2013학년도에도 수익자부담 교육비인 기숙사비에서 감가상각 총당금 64,320천원을 추가 적립하였음
- 그 적립금에서 2014~2015학년도에 기숙사 방충망 공사, 침대 매트리스 구입, 기숙사 천장형 에어컨 세척비, 학생 공용 테이블 등으로 적립금 관리 계좌에서 계 92,922천원을 직접 집행하였고, 현재 적립금 집행 잔액 65,801천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